

民法中改正法律案

(이경숙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04. 8.

발 의 자 : 의원

제안이유

현행 민법 친족편에서는 현실과는 무관한 관념상의 가(家)를 구성하여 호주를 중심으로 호주와 다른 가족구성원간의 관계를 종적이고 권위적인 관계로 규율함으로써 가부장적 사고가 고착화되고 이에 따라 남녀차별을 조장하며 가족구성원들의 화합과 복리를 저해하는 전근대적인 가족관념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가(家)의 개념과 호주제를 전면 폐지하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남녀평등과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시대적 변화에 따른 현실의 가족생활에 부합하는 가족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자녀의 성(姓)과 본(本)에 관하여는 부모가 협의한 바에 따라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성(姓) 불변의 원칙으로 인한 불합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동성동본금혼제도를 폐지하고,

친양자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호주에게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여 호주를 정점으로 강제적이고 일률적으로 일가를 구성하도록 하는 것은 가족구성원들이 평등하게 가족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므로 호주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778조 삭제).

나.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그 가에 입적한 자를 가족으로 규정하는 것은 실제 가족 공동체와 전혀 부합하지 않고, 호주와 가족구성원과의 관계를 종적이며 권위적인 가부장적인 관계로 고착화시키고 부부를 차별하며 다양한 가족형태를 수용하지 못하여 이를 삭제함(안 제779조 삭제).

다. 남녀평등과 혼인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동성동본금혼제도를 폐지하고 근친혼금지제도로 전환하되, 8촌 이내의 부(父)계혈족 또는 모(母)계혈족 사이에서는 혼인을 금지하는 근친혼제한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안 제809조).

라. 부성추정의 충돌을 피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하여 6월의 재혼금지기간을 두고 있는 것은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규정으로 비쳐질 수 있고, 친자관계 감정기법의 발달로 이러한 제한 규정을 둘 필요성이 없어졌으므로 이를 삭제함(현행 제811조 삭제).

마. 지금까지는 자녀의 성(姓) 선택시 원칙적으로 부계혈통만을 강제

하고 모계혈통을 부인하였으나, 앞으로는 자녀의 성(姓)과 본(本)을 결정함에 있어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고,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도록 함(안 제781조 삭제 및 제865조의2제1항 신설).

바.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변경할 수 있게 함(안 제865조의2제2항 신설).

사. 현행 양자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양자의 복리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하여,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관계로 보아 종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며 친양자의 성과 본은 제865조의2를 준용하도록 하는 친양자제도를 신설함(안 제908조의2 내지 제908조의8 신설).

民法中改正法律案

民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편제2장(제778조 내지 제789조·제791조 및 제793조 내지 796조)
을 삭제한다.

제80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전의 혈족
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
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제811조를 삭제한다.

제815조 본문중 “다음各號의”를 “다음 각호의 1의”로 하고, 동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제816조 각호외의 부분중 “다음各號의”를 “다음 각호의 1의”로 하고, 동조제1호중 “第807條乃至第811條”를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로 한다.

제826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8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65조의2(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모가 협의한 바에 따라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②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③부모중 일방을 알 수 없는 자는 다른 일방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④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제4관 친양자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①친양자(親養子)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1. 5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86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이 있을 것

②가정법원은 친양자로 될 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친(養親)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제908조의3(친양자 입양의 효력) ①친양자는 출생한 때부터 부부의 혼인중의 출생자로 본다.

②친양자의 입양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의2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08조의4(친양자 입양의 취소 등) ①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親生)의 부 또는 모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908조의2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의 사실을 안 날부터 6월내에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883조 및 제884조의 규정은 친양자 입양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08조의5(친양자의 파양) ①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겸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의 파양(罷養)을 청구할 수 있다.

1.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2.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悖倫)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

②제898조 및 제905조의 규정은 친양자의 파양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08조의6(준용규정) 제908조의2제2항의 규정은 친양자 입양의 취소 또는 제908조의5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파양의 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08조의7(친양자 입양의 취소·파양의 효력) ①친양자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때에는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전의 친족관계는 부활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아니한다.

제908조의8(준용규정) 친양자에 관하여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제865조의2 및 양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66조중 “直系血族, 戶主”를 “직계혈족”으로 한다.

제968조중 “傍系血族 및 戶主는”을 “방계혈족은”으로 한다.

제4편제8장(제980조 내지 제982조·제984조 내지 제987조·제989조 및 제991조 내지 제995조)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편 제2장(제778조 내지 제789조 및 제791조 내지 제796조), 제826조제3항 및 제4항, 제865조의2조, 제908조의2 내지 제908조의8조, 제966조, 제968조, 제4편제8장(제980조 내지 제982조, 제984조 내지 제987조, 제989조 및 제991조 내지 제99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효력의 불소급) 이 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혼인의 무효·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혼인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후에는 혼인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4조(친양자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된 자를 친양자로 하려는 자는 제908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의하여 기간이 변경된 경우에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 법의 개정규정과 종전의 규정중 그 기간이 장기인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가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가목(1)제7호를 삭제하고, 동항나목(1)제4호중 “第781條第3項”을 “제865조의2제4항”으로 하며, 동목(1)제25호를 삭제하고, 동목(1)에 45 및 4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5. 민법 제865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자의 성과 본의 결정

46. 민법 제865조의2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자의 성과 본의 변경 허가

제2편제4장(제32조 및 제33조)을 삭제한다.

②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본문중 “兄弟姉妹와 戶主”를 “형제자매”로 하고, 제33조제4항중 “兄弟姉妹·戶主”를 “형제자매”로 한다.

③감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중 “親族·戶主·家族”을 “친족”으로 한다.

④점사징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親族, 戶主・家族”을 “친족”으로 한다.

⑤공증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호중 “配偶者, 親族 또는 同居의 戶主나 家族”을 “배우자 또는 친족”으로 한다.

제33조제3항제6호중 “親族, 同居의 戶主 또는 家族”을 “친족”으로 한다.

⑥국가인권위원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2항중 “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을 “친족”으로 한다.

⑦국민투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중 “戶主・世帶主・家族”를 “세대주・가족”으로 한다.

⑧군사법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호중 “親族・戶主・家族”을 “친족”으로 한다.

제59조제2항 및 제66조제1항중 “直系親族・兄弟姉妹 및 戶主”를 각각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한다.

제18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친족 또는 친족관계에 있던 자

제238조의2제1항 전단 및 제252조제1항중 “戶主・家族”을 각각 “가족”으로 한다.

제398조제1항중 “兄弟姉妹・戶主”를 “형제자매”로 한다.

⑨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중 “家族 및 親族關係”를 “친족관계”로 한다.

⑩민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호 및 제314조제1호중 “친족·호주·가족”을 각각 “친족”으로 한다.

⑪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중 “친족·가족 또는 호주”를 “친족”으로 한다.

⑫밀향단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同居親族·戶主·가족”을 “동거친족”으로 한다.

⑬범죄인인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중 “兄弟姉妹, 戶主”를 “형제자매”로 한다.

⑭법무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戶主·家族”을 “가족”으로 한다.

⑮보안관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6항 단서중 “親族·戶主·同居의 家族”을 “친족”으로 한다.

⑯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戶主 또는 家族”을 “가족”으로 한다.

⑰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중 “兄弟姉妹 또는 戶主”를 “형제자매”로 한다.

⑱소액사건심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兄弟姉妹 또는 戶主”를 “형제자매”로 한다.

⑲재외공관공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중 “配偶者·親族 또는 同居의 戶主이거나 家族”을 “배우자 또는 친족”으로 한다.

제19조제4항제5호중 “配偶者・親族, 同居의 戶主 또는 家族”을 “배우자, 친족”으로 한다.

㉔재외국민취적·호적정정및호적정리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死亡・戶主相續”을 “사망”으로 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㉕전염병예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본문 및 단서중 “戶主 또는 世帶主”를 각각 “세대주”로 한다.

㉖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6조의3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㉗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중 “兄弟姉妹와 戶主”를 “형제자매”로 한다.

㉘특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8조제2호중 “親族・戶主”를 “친족”으로 한다.

㉙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중 “親族・戶主・家族關係”를 “친족관계”로 한다.

제27조제2항중 “兄弟姉妹와 戶主”를 “형제자매”로 한다.

㉚헌법재판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2호중 “親族・戶主・家族”을 “친족”으로 한다.

㉛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1조제2항 및 제155조제4항중 “親族, 戶主”를 각각 “친족”으로

하고, 제328조제1항중 “同居親族, 戶主”를 “동거친족”으로 한다.

㉔형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호중 “親族, 戶主, 家族 또는 이러한 關係”를 “친족 또는 친족관계”로 한다.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중 “兄弟姉妹와 戶主”를 각각 “형제자매”로 한다.

제14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친족 또는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

제201조의2제1항 전단 및 제214조의2제1항 중 “兄弟姉妹, 戶主, 家族이나”를 각각 “형제자매나”로 한다.

제341조제1항중 “兄弟姉妹, 戶主”를 “형제자매”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第4編 親族	第4編 親族
第1章 總則(생략)	第1章 總則(현행과 같음)
第2章 戶主와 家族	<삭제>
第778條(戶主의定義) 一家의系統을繼承한者, 分家한者또는其他事由로因하여一家를創立하거나復興한者是戶主가된다.	<삭제>
第779條(家族의範圍) 戶主의配偶者, 血族과그配偶者其他本法의規定에依하여그家에入籍한者是家族이된다.	<삭제>
第780條(戶主의變更과家族) 戶主의變更이있는境遇에는前戶主의家族은新戶主의家族이된다.	<삭제>
第781條(子의籍, 姓과本) ①子는父의姓과本을따르고父家에入籍한다 다만, 父가外國人인 때에는母의姓과本을따를수있고母家에入籍한다.	<삭제>
②父를알수없는子는母의姓과本을따르고母家에入籍한다	
③父母를알수없는子는法院의許可를얻어姓과本을創設하고一家	

<u>를創立한다 그러나姓과本을創設</u> <u>한後父또는母를알게된때에는父</u> <u>또는母의姓과本을따른다</u>	
第782條(婚姻外의子の入籍) ①家 族이婚姻外의子를出生한때에는 그家에入籍하게할수있다 ②婚姻外의出生子が父家에入籍 할수없는때에는母家에入籍할수 있고母家에入籍할수없는때에는 一家를創立한다	<삭 제>
第783條(養子와그配偶者等の入籍) 養子の配偶者, 直系卑屬과그配 偶者는養子와함께養家에入籍한 다	<삭 제>
第784條(夫의血族아닌妻의直系卑 屬의入籍) ①妻가夫의血族아닌 直系卑屬이있는데에는夫의同意 를얻어그家에入籍하게할수있다 ②前項의境遇에그直系卑屬이他 家の家族인때에는그戶主의同意 를얻어야한다	<삭 제>
第785條(戶主의直系血族의入籍) 戶主는他家の戶主아닌自己의 直系尊屬이나直系卑屬을그家에 入籍하게할 수 있다	<삭 제>

第786條(養子와그配偶者等の復籍)

<삭 제>

①養子와그配偶者, 直系卑屬및 그配偶者는入養의取消또는罷養으로因하여그生家에復籍한다

②前項의境遇에그生家が廢家또는無後된때에는生家を復興하거나一家를創立할 수 있다

第787條(妻等の復籍과一家創立)

<삭 제>

①妻와夫의血族아닌그直系卑屬은婚姻의取消또는離婚으로因하여그親家에復籍하거나一家를創立한다

②夫가死亡한境遇에는妻와夫의血族아닌그直系卑屬은그親族에復籍하거나 一家를 創立할 수 있다.

③前2項의境遇에그親家が廢家또는無後되었거나其他事由로因하여復籍할수없는때에는親家を復興할 수 있다.

第788條(分家) ①家族은分家할수

<삭 제>

있다

②未成年者가分家함에는法定代理人の同意를얻어야한다

第789條(法定分家) 家族은 婚姻하

<삭 제>

면 당연히 分家된다. 그러나 戶主의 直系卑屬 長男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791條(分家戶主와그家族) ①分家戶主의配偶者, 直系卑屬과그配偶者는그分家에入籍한다 ②本家戶主의血族아닌分家戶主에直系尊屬은分家에入籍할수있다	<삭 제>
第793條(戶主의入養과廢家) 一家創立또는分家로因하여戶主가된者는他家에入養하기爲하여廢家할 수 있다	<삭 제>
第794條(女戶主의婚姻과廢家) 女戶主는婚姻하기爲하여廢家할수있다	<삭 제>
第795條(他家에入籍한戶主와그家族) ①戶主가廢家하고他家에入籍한때에는家族도그他家에入籍한다 ②前項의境遇에그他家에入籍할수 없거나 원하지 아니하는 家族은一家를創立한다	<삭 제>
第796條(家族의特有財産) ①家族이自己의名義로取得한財産은그	<삭 제>

<u>特有財産으로 한다</u> ② <u>家族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財産은 家族의 共有로 推定한다.</u>	
第809條(同姓婚等の禁止) ① <u>同姓同 本人血族사이에서는 婚姻하지 못 한다</u> ② <u>男系血族의 配偶者, 夫의 血族 및 其他8寸以內의 姻戚이거나 이러한 姻戚이었던者 사이에서는 婚姻하지 못 한다</u>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 <u>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 인하지 못 한다.</u> ② <u>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 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 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 한다.</u> ③ <u>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 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 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 이에서는 혼인하지 못 한다.</u>
第811條(再婚禁止期間) <u>女子는 婚姻 關係의 終了한 날로부터 6月을 經過 하지 아니하면 婚姻하지 못 한다 그 러나 婚姻關係의 終了後 解産한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삭 제>
第815條(婚姻의 無效) <u>婚姻은 다음 각 號의 境遇에는 無效로 한다</u> 1. (생 략)	第815條(婚姻의 無效) ---- <u>다음 각 호의 1의-----.</u> 1. (현행과 같음)

2. <u>當事者間에直系血族, 8寸以內의傍系血族및그配偶者인親族關係가있거나또는있었던때</u> 3. <u>當事者間에直系姻戚, 夫의8寸以內의血族인姻戚關係가있거나또는있었던때</u> <u><신 설></u>	2. <u>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u> 3. <u>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u> 4. <u>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u>
第816條(婚姻取消의事由) 婚姻은다음各號의境遇에는法院에그取消를 請求할수있다. 1. 婚姻이第807條乃至第811條의規定에違反한때 2. 3. (생 략)	第816條(婚姻取消의事由) -----다음 각호의 1의----- 1. -----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 2. 3. (현행과 같음)
第826條(夫婦間의義務) ① · ② (생 략) ③<u>妻는夫의家에入籍한다 그러나妻가親家の戶主또는戶主承繼人인때에는夫가妻의家에入籍할수있다</u> ④<u>前項但書의境遇에夫婦間의子</u>	第826條(夫婦間의義務) ① · ② (현행과 같음) <u><삭 제></u> <u><삭 제></u>

<u>는母의姓과本을따르고母의家에</u> <u>入籍한다</u> <u><신 설></u>	<u>제865조의2(자의 성과 본) ①자는</u> <u>부모가 협의한 바에 따라 부 또</u> <u>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u> <u>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u> <u>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u> <u>에는 부 또는 모의 청구에 의하</u> <u>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u> <u>②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u> <u>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u> <u>에는 부·모 또는 자의 청구에</u> <u>의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u> <u>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u> <u>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u> <u>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u> <u>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u> <u>사가 청구할 수 있다.</u> <u>③부모 중 일방을 알 수 없는</u> <u>자는 다른 일방의 성과 본을 따</u> <u>른다.</u> <u>④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u> <u>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u> <u>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u>
---	--

<신 설> <신 설>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제4관 친양자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①친양자(親養子)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1. 5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86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이 있을 것 ②가정법원은 친양자로 될 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친(養親)의 양
---------------------------------------	---

<u><신 설></u>	<u>②제883조 및 제884조의 규정은</u> <u>친양자 입양에 관하여 이를 적용</u> <u>하지 아니한다.</u>
<u><신 설></u>	<u>제908조의5(친양자의 파양) ①양친,</u> <u>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u> <u>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있</u> <u>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u> <u>의 파양(罷養)을 청구할 수 있다.</u> <u>1.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u> <u>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u> <u>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u> <u>2.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悖</u> <u>倫)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u> <u>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u> <u>②제898조 및 제905조의 규정은</u> <u>친양자의 파양에 관하여 이를 적</u> <u>용하지 아니한다.</u>
<u><신 설></u>	<u>제908조의6(준용규정) 제908조의2</u> <u>제2항의 규정은 친양자 입양의</u> <u>취소 또는 제908조의5제1항제2호</u> <u>의 규정에 의한 파양의 청구에</u> <u>관하여 이를 준용한다.</u>
<u><신 설></u>	<u>제908조의7(친양자 입양의 취소 ·</u> <u>파양의 효력) ①친양자 입양이</u> <u>취소되거나 파양된 때에는 친양</u>

<신 설> 第966條(親族會의召集) 親族會는 本人, 그法定代理人, 配偶者, 直系血族, 戶主, 會員, 利害關係人 또는檢事의請求에依하여 家庭法院이 이를 召集한다 第968條(親族會에서의意見開陳) 本人, 그 法定代理人, 配偶者, 直系血族, 4寸以內的 傍系血族 및 戶主는 親族會에 出席하여 意見을 開陳할 수 있다. 第8章 戶主承繼 第980條(戶主承繼開始의原因) 戶主承繼는다음各號의事由로因하여 開始된다	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전의 친족관계는 부활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아니한다. 제908조의8(준용규정) 친양자에 관하여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제865조의2 및 양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第966條(親族會의召集) -----直系血族----- 第968條(親族會에서의意見開陳) -----傍系血族은----- <삭 제> <삭 제>
---	--

1. <u>戶主가死亡하거나國籍을喪失한때</u> 2. <u>養子인戶主가入養의無效또는取消로因하여離籍된때</u> 3. <u>女戶主가親家에復籍하거나婚姻으로因하여他家에入籍한때</u>	
第981條(戶主承繼開始의場所) 戶主承繼는被承繼人의住所地에서 開始된다	<삭 제>
第982條(戶主承繼回復의訴) ①戶主承繼權이僭稱戶主로因하여侵害된때에는承繼權者또는그法定代理人은戶主承繼回復의訴를提起할수있다 ②前項의戶主承繼回復請求權은그侵害를안날로부터 3年, 承繼가開始된날로부터10年을經過하면消滅한다	<삭 제>
第984條(戶主承繼의順位) 戶主承繼에있어서는다음順位로承繼人이된다 1. <u>被承繼人의直系卑屬男子</u> 2. <u>被承繼人의家族인直系卑屬女子</u> 3. <u>被承繼人의妻</u>	<삭 제>

4. 被承繼人の家族인直系尊屬女
子

5. 被承繼人の家族인直系卑屬의
妻

第985條(同前) ①前條의規定에依한

<삭 제>

同順位의直系卑屬이數人인때에
는最近親을先順位로하고同親等
의直系卑屬中에서는婚姻中の出
生子를先順位로한다

②前項의規定에依하여順位同一
한者가數人인때에는年長者를先
順位로한다 그러나前條第5號에
該當한直系卑屬의妻가數人인때
에는그夫의順位에依한다

③養子는入養한때에出生한것으
로본다

第986條(同前) 第984條第4號의直系

<삭 제>

尊屬이數人인때에는最近親을 先
順位로한다

第987條(戶主承繼權없는生母) 養子

<삭 제>

인被承繼人の生母나被承繼人の
父와婚姻關係없는生母는被承繼
人の家族인境遇에도그戶主承繼
人이되지못한다 그러나被承繼人
이分家또는一家創立의戶主인때

<u>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u>	
<u>第989條(婚姻外出生子の承繼順位)</u> <u>第855條第2項의規定에依하여婚</u> <u>姻中の出生子が된者の承繼順位</u> <u>에關하여는그父母가婚姻한때에</u> <u>出生한 것으로 본다</u>	<u><삭 제></u>
<u>第991條(戶主承繼權의 포기) 戶主</u> <u>承繼權은 이를 拋棄할 수 있다.</u>	<u><삭 제></u>
<u>第992條(承繼人의缺格事由) 다음各</u> <u>號에該當한者是戶主承繼人이 되</u> <u>지못한다</u> 1. <u>故意로直系尊屬, 被承繼人, 그</u> <u>配偶者또는主承繼의先順位者를</u> <u>殺害하거나殺害하려는者</u> 2. <u>故意로直系尊屬, 被承繼人과그</u> <u>配偶者에게傷害를加하여死亡에</u> <u>이르게한者</u>	<u><삭 제></u>
<u>第993條(女戶主와 그 承繼人) 女戶</u> <u>主의死亡또는離籍으로因한戶主</u> <u>承繼에는第984條의規定에依한直</u> <u>系卑屬이나直系尊屬이있는境遇</u> <u>에도그直系卑屬이그家の系統을</u> <u>繼承할血族이아니면戶主承繼人</u> <u>이되지 못한다 그러나 被承繼人</u> <u>이分家또는一家를創立한女戶主</u>	<u><삭 제></u>

<u>인境遇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u> <u>第994條(承繼權爭訟과財産管理에</u> <u>關한法院의處分) ①承繼開始된</u> <u>후 承繼權의存否와그順位에影響</u> <u>있는爭訟이法院에繫屬된때에는</u> <u>法院은 被承繼人의配偶者, 4寸以</u> <u>內的親族其他利害關係人의依하</u> <u>여그 承繼財産의管理에必要한處</u> <u>分을하여야한다.</u> <u>②法院이財産管理人을選任한境</u> <u>遇에는第24條乃至第26條의規定</u> <u>을準用한다</u>	<u><삭 제></u>
<u>第995條(承繼와權利義務의承繼) 戶</u> <u>主承繼人은承繼가開始된때로부</u> <u>터戶主의權利義務를承繼한다 그</u> <u>러나前戶主의一身에專屬한것은</u> <u>그러하지아니하다.</u>	<u><삭 제></u>